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40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서영교·양정숙·오영훈

임호선 · 김영배 · 이해식

오영환 • 박상혁 • 박홍근

한병도 · 임오경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

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	한 감면) ①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	<u>2024년 12월 31일</u>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	②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u>2024년 12월 31일</u>
면제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위한 감면) ①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 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 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 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u>2</u>	024년	12월	31
<u>일</u>			
1. ~ 4.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u>	12월 3	<u> 31일</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